

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3조(세출예산 집행 기준) [별표4]
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,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 처리 절차는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·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[품의],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[원인행위],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 결정 및 지급(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)[지출] 하여야 한다고 규정

□ 지적사항

사례1> '20년 ○월~○월까지 총 ○건에 대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전 품의 절차 누락 후 결제

사례2>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전 품의 전 법인카드 결제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집행 시 의사결정(지출 품의 결제)을 먼저 거친 후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의할 것